

화심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

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시행하는 「화심지구 배수개선사업」과 관련,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경남 하동군 하동읍(화심리, 두곡리, 신기리)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,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(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자 및 주소, 물건 종류, 구조, 수량 등)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익사업의 개요

- 가. 사업의 명칭 : 화심지구 배수개선사업
- 나. 사업의 위치 :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(화심리, 두곡리, 신기리) 일원
- 다. 사업의 규모 : 배수장 2개소, 배수로 정비 2조, 매립 13.8ha
- 라. 사업 기간 : 2023년 10월 ~ 2027년 12월
- 마. 사업 시행자 :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

2.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

- 가. 화심지구 배수개선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(분묘포함) 등과 권리일체
 - 편입토지 지번

소재지			지 번	필지수
군	읍면동	리		
하동군	하동읍	화심리	305, 59-4, 59-1, 59-8	2
		두곡리	1590-3, 1590-4, 1590-5, 1595-2	4
		신기리	109-121, 109-122, 109-186, 6-109, 6-75, 6-77, 6-10, 497, 6-94, 6-35, 6-93, 6-66	2
필지 총계				8

- 편입물건 :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(분묘포함) 일체
- 나.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(미등기 소유자·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)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.
- 다.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(www.ekr.or.kr) 공지사항, 하동군 홈페이지(www.hadong.go.kr) 고시·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
3.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

-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
- 주 소 :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12 (우편번호 52332)
 - 전화 및 팩스번호 : ☎ 055-880-5145, FAX 055-883-5368

4.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: 2024. 2. 26 ~ 2024. 3. 12

- 가. 열람 방법은 열람 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(이해 관계인)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.
- 나.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



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, 3월 12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농어촌사업부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합니다.

다. 열람 및 이의신청 시간은 09:00 ~ 18:00이며, 토요일,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.

5. 보상시기 및 방법

가. 보상의 시기는 2024년 4월 1일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

(단,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)

나. 보상가격 결정은 『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2인 이상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.

다.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.

라.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, 보상금액, 보상절차,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,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보상의 절차

가.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→ 열람 및 이의신청 →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→ 보상협의요청(개별통보) → 협의(계약체결) →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→ 수용재결(협의 불성립 시) → 공탁

나.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,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83조, 제85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7. 기 타

가.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.

나.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다. 주소나 거소불명,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.

라.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.

마.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바. 보상절차, 토지조서의 열람, 이의신청방법(소정양식),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농어촌사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[전화번호 : 055-880-5145, FAX : 055-883-5368]

2024년 2월 26일

사업시행자 : 한국농어촌공사 하동·남해지사장

